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 포함〉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75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9. 1.

(3) 회 부 일 : 2025.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허. (생략) <신설> 고. (생략) 2. ~ 7. (생략)	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 -----. 1. ----- ----- ----- ----- ----- ----- ----- ----- ----- ----- -----. 가. ~ 허. (현행과 같음) 고. 「주거기본법」 노. (현행 고목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이란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하는 각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될 경우, 현행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²⁾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법률 제20883호’(2025.4.1.일부개정, 시행 2025.10.2.)

□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을 현행법의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의 혜택 및 의무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지정에 따른 혜택과 의무 >

	내용	관련 조항·지침
혜택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종사자 경력 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공과금 감면 - 전기료 20%, 가스료(산업용 단가), 상수도료(30%)	전기료(전기공급약관 신고대상인 사회복지시설) 가스료(지자체별 도시가스공급규정) 전화요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법정기부금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소득세법」 제34조
의무	재무·회계규칙 준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설 안전점검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후원금의 관리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주거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의식주(衣食住)의 하나로서,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³⁾ 및 「주거급여법」⁴⁾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등 중요한 사회문제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4)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하여 현행법에 따라 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도모하고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주거기본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거기본법」의 주거복지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내용으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주거기본법」은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주거 전반에 관한 기준과 지원·전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나 시설·인력 기준에 따른 규율을 이중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분리하여 「주거급여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전문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과 별도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거기본법」 등을 규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주거기본법」을 현행법에 추가함에 따른 제도적·운영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주거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되더라도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설치·신고 절차, 시설·안전 기준 및 인력·자격·운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주거복지센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⁵⁾이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센터의 경우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⁶⁾에 속해 운영되고 있어 독립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어렵고, 담당자의 채용요건을 공사 사규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채용요건⁷⁾과 상이한 측면이 있음.

다만,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한다면, 국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실무경험 인정⁹⁾, 지방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6) 지역본부에 속하여 건설임대·매입임대 운영, 재공급, 계약체결, 입주자관리, 주거급여 등의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권역별 지사를 말함.

7)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

- [별표1]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급 취득가능

- [별표3]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급 응시가능

공무원의 특수 직무수당 인정¹⁰⁾, 사회복지시설 근무시 유사경력
으로써 호봉 80% 산정¹¹⁾ 등의 기대효과가 있어, 주거복지센터
종사자 등의 보수나 처우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법률 제20883호¹²⁾가 시행되기 전에 발의된 것으로
해당 법률이 10월 2일자로 시행되었으므로, 개정문과 더불어 부칙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5년 10월 2일’로 두고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주거복지 정책수립, 센터 설치, 상담서비스 제공 등
주거복지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주거기본법」을 ‘사회
복지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국토교통부) 동 개정안 통과 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인력,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주거 전반에 관한 기준과 지원·전달체계 등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

- (요건①)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월 7만원)

- (요건②) 요건① 지급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2년 이상 근무한 자(월 3만원)

1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5

① (80% 인정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12)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0883호, 2025.4.1.일부개정, 시행 2025.10.2.)

주요 개정사항: 제2조제1호하목 신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주거복지)와 보건복지부(사회복지) 간 소관·재원·평가 지표 중복이 생길 수 있고, 주거기본법·공공주택 특별법·주거급여 체계와의 역할 분담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복지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신고(지정) 절차, 시설·안전 기준, 인력·자격·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회계·감사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현행 상 적용 어려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이 포함되어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경력이 정식으로 인정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 수립·공고 및 회계 반영 의무가 부여되므로 현행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해당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주거복지센터 개요 및 주요 업무

□ 주거복지센터 개요

○ 주거복지센터는 국가·지자체 주거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

- (현황) 국가는 LH에 위탁 설치·운영(63개소) 중이며, 지자체는 직영·위탁(공공 또는 민간) 등 방식으로 설치·운영(66개소)
- (예산) 운영예산 지원은 없으나,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주거복지센터 등에 위탁·수행(간접 지원)

* 쪽방·고시원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안정적 거주로의 이주·정착을 밀착 지원('25년 예산 100억원 : LH 50억, 지자체 50억)

<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국가	4	3	4	3	4	3	1	1	17	3	4	2	3	2	3	5	1	63
지자체	26	2	2	2	1	-	-	1	25	-	1	1	1	1	1	-	2	66

※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는 4개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강원, 경남) 미설치

□ 주요 업무

- (정보제공·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주거급여 신청, 지자체 특화 서비스 등 주거복지 전반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를 관리
- (실태조사)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 등 조사를 수행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지원
- (기관연계) 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 필요 가구를 발굴하고,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 서비스 연계
- (홍보·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택개조, 재개발 등 주거 관련 교육을 통해 이해 제고
- (주거상향사업) 주거취약계층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등 지역 복지 역량을 활용